

# 해외송금약관 공시사항

## 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16.02.25	2016.02.25	X	O

## 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3.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	3.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<b>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</b> 아니한다.	문구 추가

## 3. 담당부서명 : 개인금융업무부

## 해외 송금 약관

1. 중국공상은행(이하 '은행')은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지급지시/송금수표를 은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(이하 '환거래은행') 앞으로 지시/발행할 수 있습니다.
  
2.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/송금수표에 관련된 지시 등을 함에 있어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
3.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**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**
  - ① 대한민국 정부 또는 외국정보의 법령, 규칙, 제한 등의 규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
  - ② 환거래은행의 착오, 부주의, 지급지연, 지급불능, 기타 은행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
  - ③ 지급지시/송금수표 발행 통지서의 전달 중에 발생하는 분실, 착오, 훼손, 지연, 불착, 그릇된 전달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
  - ④ 기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손해

4. 신청인의 송금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은 외국환관리 관계법령, 규정 및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지급지시에 의한 송금의 경우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,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나 원화금액으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.
  
5. 송금수표의 지급자금이 지급은행에 제공될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청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지급은행에 송금수표 액면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 
6. 신청인은 우편료, 전신료, 기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이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입금하여야 합니다.